

### 3. 建設技術管理法施行令(案) 및 施行規則(案) 立法豫告

建設交通部 公告 第1995-126號, 127號 1995. 5. 16

#### 1. 부실공사 방지

건설교통부는 건설공사의 부실시공을 방지하고 견실시공을 유도하기 위하여 건설기술자에게 신고를 의무화하고 경력수첩을 발급하여 경력사항을 구체적으로 기록관리함으로써 책임의식을 고취시키고 전문화를 유도하는 한편, 부실벌점제도를 도입하여 현장점검 실시결과 부실정도에 따라 건설업체·감리업체, 설계용역업체 및 기술자별로 부실벌점을 부여하고 이를 누계관리하여 건설공사를 부실하게 시공한 건설업체는 3년간 55억이상 건설공사의 입찰자격 사전심사, 최적격업체 선정, 우수건설업체 지정시 불이익을 주도록 하는 한편, 공제조합 보증한도를 감액하고 보증수수료는 증액하며 주택기금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등 불이익을 주도록하고 설계·감리업체도 입찰시 불이익을 주는등 부실업체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게도 업무정지기준을 마련하고 설계용역업체의 입찰참가 제한기준을 설정함으로써 건설공사의 견실시공을 유도하도록 하였다.

또한, 감리원의 교육주기를 5년주기에서 3년주기로 강화하고 특수공법 및 85%이하로 낙찰된 공사만 외국감리회사가 감리할 수 있도록 하던 외국감리제도를 철폐하여 선진외국의 고급감리 기술도입을 촉진함으로써 우리건설업계의 감리기술을 한차원 높이도록 하였으며, 설계용역에 대한 사업수행능력 평가대상 규모를 확대하여 평가를 강화함으로써 기술능력이 높은 업체가 수주할 수 있도록 하였다.

건설공사의 부실설계를 근원적으로 방지하기 위하여 중요시설물에 대해서는 설계감리를 받도록 하고, 설계심의의 내실화를 기하기 위하여 중앙건설기술심의위원회 산하에 상임전문위원제를 도입하여 설계심의를 전문화하는 한편 건설공사의 시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발주청은 적정한 설계기간과 공사기간을 부여하도록 하고 조사설계시 조사할 내용 및 조사항목등을 설정함으로써 지반조사 불충분으로 인한 설계변경요인을 방지하는등 설계 및 시공부실을 방지하기 위한 보완대책을 마련하였다.

## 2. 기술경쟁력 강화

건설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기술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신기술의 보호기간을 최장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고 5억원 미만의 건설기술용역 또는 건축토보설계 용역 발주시 기술우위업체를 선정할 수 있도록 기술과 가격을 동시에 입찰토록 하여 3인의 기술우위업체를 선정 후 우수업체순으로 협상하여 낙찰자를 정할 수 있는 기술·가격분리 입찰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건설기술의 공모제도를 도입함으로써 건설업체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하도록 하였다.

이 개정안은 '95. 5. 16일 입법예고하고 국무회의등의 심의를 거쳐 오는 7월부터 시행하기로 하였다.

## 참고자료

### 1. 신고대상 건설기술자의 신고의무(미신고시 과태료 50만원 이하)

-건설관련업체에 종사하는 건설기술자별로

- 기술사, 기사1, 2급 : '95. 7. 1~12. 31까지 신고
- 학·경력자 : '95. 7. 1~12. 31까지 신고
- 기능장, 기능사1, 2급, 기능사보 : '96. 1. 1~6. 30까지 신고

※ 학·경력자의 건설기술자 인정기준

구 분	인 정 기 준	
	자 격 자	학 력 자
특 급 기 술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술사</li> <li>· 기사1급, 10년 경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 3년 경력</li> <li>· 석사, 7년 경력</li> <li>· 학사, 12년 경력</li> </ul>
고 급 기 술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1급, 7년 경력</li> <li>· 기사2급, 10년 경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박사</li> <li>· 석사, 4년 경력</li> <li>· 학사, 9년 경력</li> <li>· 전문대, 12년 경력</li> </ul>
중 급 기 술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1급, 4년 경력</li> <li>· 기사2급, 7년 경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석사</li> <li>· 학사, 6년 경력</li> <li>· 전문대, 9년 경력</li> <li>· 고졸, 12년 경력</li> </ul>
초 급 기 술 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기사1급</li> <li>· 기사2급, 2년 경력</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학사</li> <li>· 전문대, 3년 경력</li> <li>· 고졸, 6년 경력</li> </ul>

2. 부실벌점관리

◦ 대상공사

-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 건축물 바닥면적 합계가 6천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 불이익 부여기준 : 최근 3년간의 누계벌점을 단계적 가중기준에 따라 감점점수로 환산하여 평가점수에서 감점(최고 5점)

- 건설관련업체

- 누계벌점 50점이하 : 매점당 0.02점씩 감점
- 누계벌점 50~100점 : 매점당 0.03점씩 감점
- 누계벌점 100~150점 : 매점당 0.04점씩 감점

- 누계벌점 150점초과 : 매점당 0.05점씩 감점
- 건설기술자 및 감리원 : 최근 3년간의 위반등급별 위반회수를 다음기준에 따라 점수화하여 평가점수에서 감점(최고 5점)
  - 1급위반 : 위반회수 1회당 1점
  - 2급위반 : 위반회수 1회당 0.5점
  - 3급위반 : 위반회수 1회당 0.2점
- 벌점적용 : 건설교통부장관이 건설관련업체·건설기술자 및 감리원에게 준 부실벌점을 누계하여 발주청에 '통보하면 발주청은 입찰시 불이익 부여기준에 의하여 감점하여 낙찰

### 3. 용역입찰제도 개선

- 설계용역
  - 입찰자격 사전심사(P.Q) : 3억~5억→1.5억~5억
  - 기술제안서 심사(P.P) : 5억(현행과 같음)
- 책임감리용역
  - P.Q : 3억이상→1.5억이상
- 기술·가격분리입찰제 도입
  - 대상 : 5억원 이상
  - 선정기준 : 3인의 기술우수업체 선정후 최저입찰금액으로 기술우수업체순으로 협상

### 4. 1종 시설물

시설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특별법시행령(별표1)  
 도로, 철도, 항만, 댐, 건축물, 하천, 상하수도, 폐기물매립시설등

### 5. 상임전문위원회 도입

- 전문분야별로 10~15인의 상임전문위원을 위촉하여 설계심의 내실화 도모